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4. 10. 31 선고 2023가단4248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성중

변론 종결 2024. 9. 26.

판결 선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32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4.부터 2023.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1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C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가단7653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3. 'C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11. 1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2. 3.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서'라 한다),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1차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문서들에는 모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연대보증확인서

위 사람(C를 채무자라 부른다) 채권자(원고)와 연대보증서를 체결함에 있어 채무자(피고)의 모든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자와 보증인이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합의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금전대여사기고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원만히 합의합니다.

1. 가해자(C)는 위 사건(2018고단207호)과 관련하여 피해자(원고)에게 2018. 12. 3. 금 천만원과 2018. 12. 15. 금 팔백만원과 2021. 12. 3. 금 팔천만원과 보증인(피고)의 부동산 매매시에 금 오천만원을 채무변제한다.
2. 가해자는 위 사건의 형사건을 취하하지만 모든 채무가 변제될시까지 민사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며, 가해자의 채무불능시에는 보증인(피고)이 가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3. 위 사건의 보증인(피고)은 채무변제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법적 공증을 이행하며 피해자의 법적인 절차를 승인한다.

이행각서

각서인 피고는 채무인수계약서를 계약함에 있어 채무인수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각서인의 귀책사유가 발생할시 전적으로 각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임을 이행각서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 3. 자신 소유의 문경시 D대 818m² 및 그 지상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2018. 12.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2차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가해자(C)의 보증인(피고)는 형사합의서와 더불어 민사상의 금전적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과 함께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보증인(피고)의 책임하에 이행하겠습니다.

피해자(원고)와 가해자(C)의 보증인(피고)는 원만한 합의로 이 각서를 작성합니다.

라. C는 2020. 6.경 원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이하 '이 사건 1 변제금'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11.부터 2021. 12. 20.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680,000원(이하 '이 사건 2변제금'이라 한다)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18,000,000원과 이 사건 1, 2 변제금 합계 4,680,000원을 제한 77,3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8. 12. 3. 피고에게 2023. 12. 3.까지 채무상환에 관한 변제독촉을 하지 않고, 변제독촉상환시일이 지날시 다시 한 번 더 합의조정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일종의 부제소합의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는 보증채무 및 그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보증계약은 무효이다.

다)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의 도장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는 의사로 피고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 및 내용에 대해 부인한다.

라) 이 사건 2차 이행각서에 날인된 도장은 피고의 도장이 아니고, 피고가 날인한 사실도 없으며, 어떠한 채무의 이행에 대해 각서한다는 것인지 특정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가해자의 채무불능시에는 보증인(피고)이 가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C의 이행불능 상태가 입증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서에서 원고가 변제독촉을 하지 않기로 한 2023. 12. 3.이 이미 지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고,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을 부제소합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제기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연대보증서에 보증채무 및 그 최고액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연대보증서,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1차 이행각서는 모두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작성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서,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1차 이행각서를 별개의 계약이라기보다는 이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에는 주채무자인 C가 부담하는 원본채무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서가 보증인보호법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그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인식하고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한다는 피고의 주장과 이 사건 2차 이행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연대보증서, 이 사건 합의서, 이 사건 1차 이행각서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가해자의 채무불능시에는 보증인(피고)이 가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C의 이행불능상태가 입증되기 전에는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마지막 변제기의 다음날인 2021. 1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3.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기동